

## 2 총회임원회 보고

제106회기 총회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총회장 배광식  
서 기 허 은

### 1. 조직

- 총 회 장 : 배광식
- 부 총 회 장 : 권순웅 노병선
- 서 기 : 허 은
- 부 서 기 : 고광석
- 회록서기 : 이종철
- 부회록서기 : 한기영
- 회 계 : 홍석환
- 부 회 계 : 지동빈

### 2. 회의

#### 1) 임원회

##### (1) 제1차 임원회

☞ 일 시 : 2021. 9. 14(화) 14:00

☞ 장 소 : 대암교회 당회실

##### ☞ 결의사항

- ① 제106회 총회 안건 중 총회임원회로 위임된 상비부, 위원회 보고 및 청원사항을 처리하다.
- ② 제106회 총회 안건 중 총회임원회로 위임된 정치부 상정안과 선거규정 개정안을 처리하다.
- ③ 민찬기 목사가 제출한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 재검표 청원의 건은 개회인원과 투표인원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④ 제106회 총회임원회 은혜로운 동행 첫행보로 농어촌교회를 방문하기로 하고 사무총장에게 맡겨 준비토록 하다.
- ⑤ 정기 임원회를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지난 목요일 11시로 정하다.

#####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 2021. 9. 27(월) 20:00

☞ 장 소 : 광양 락희호텔 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제106회 총회 시 접수된 긴급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다.
  - 가. 남평양노회 이효원 목사 외 132명이 긴급동의한 미주중부노회 복구 조직 청원의 건은 남평양노회에서 제106회 총회로 현의안을 제출한 것이 현의부에서 기각되었으므로 다시 다룰 수는 없으나 서기와 총무에게 맡겨 확인 후 차기 임원회에서 재론하기로 하다.
  - 나.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이남국 목사 외 110명이 긴급동의한 총회연금가입자회 상설기구 설치 및 재정 청원의 건은 노회를 통하여 총회 안건 상정 절차에 따라 청원할 사항이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 다. 전남제일노회 오광춘 장로 외 214명이 긴급동의한 제104회기에 개정된 감사규정을 개정



전으로 환원 요청의 건은 제105회 총회에서 규칙부가 개정안을 상정하여 처리되었던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② 제106회 총회 회의록 채택 일정을 회록서기에게 맡겨서 준비하도록 하다.
- ③ 상비부 임원을 3개 구도로 안배하지 않은 부서에 대하여 서기에게 맡겨 재조정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하다.
- ④ 제106회 수입사항 중
  - 가. 은혜로운동행기도회 운동본부를 총회장 직속으로 하여 본부장으로 장봉생 목사를 선임하고 기도운동본부 조직은 본부장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나. 총무·사무총장 업무분장은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하고, 총무는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사무총장은 총무의 지시를 받도록 가결하다.
- ⑤ 민찬기 목사가 제출한 제106회 총회 선거관련 이의신청서와 질의에 대하여는 제105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가결하다.
- ⑥ 총회임원회 시에 언론사 기자 출입을 제한하고 임원회 후에 서기가 기자 브리핑하도록 하며, 기독교신문은 사안에 따라 배석하거나 이석하도록 가결하다.

###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21. 10. 7(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제106회 총회임원 선거 관련 이의서 등에 대하여는 지난 임원회 결의대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의견을 요청하기로 하되, 총회선거규정 제30조에 의거 15일 이후에 제출된 건은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② 제105회기 총회임원회에서 이첩된 사항에 대하여
  - 가. 편목교육 수료자 학적이관 건은 차기 회의 시 다루기로 하다.
  - 나. 경안노회 영덕교회 건은 서기, 회록서기, 회계에게 맡기기로 하다.
  - 다. 순천노회 건은 장로부총회장, 서기, 부회록서기에게 맡기기로 하다.
  - 라. 박혜근 목사 재심청구 건과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의 건은 제105회기 총회임원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 마.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청원한 총회규칙 제16조 개정 청원의 건은 총회헌법 및 결의정신에 반하는 것이므로 기각하고, 총신대학교 정관을 총회결의대로 개정하여 11월 10일 까지 보고토록 지시하기로 하다.
- ③ 은혜로운동행기도운동본부에서 청원한 재정 청원의 건은 회계에게 맡겨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④ 대한성서공회에서 요청한 개역개정판 개정 원칙 연구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의 건은 황선우 교수를 추천하기로 가결하다.
- ⑤ 경중노회에서 질의한 노회가 노회산하 지교회의 행정보류를 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할 수 없다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⑥ 경북노회에서 질의한 선거공영제(후보등록제) 실행이 헌법 규칙 제7조 1항에 위헌이 되는지 질의의 건은 선거공영제는 노회가 규칙(결의)대로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⑦ 서울강남노회에서 질의한 동사무사에 관한 건은 동일교회 부목사를 바로 동사무사로 청빙하는

것은 불가하고, 동사무사는 당회결의로 청빙하되 이후에 후임목사로 청빙할 때에는 공동의회 결의로 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⑧ 총무가 제105회기 총회임원회에서 총무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결의하여 시행하였는데 106회기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니 회계와 부회계에게 맡겨 확인하여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⑨ 제106회 총회에서 총회연기금 활성화 방안을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목사 부총회장, 회록서기, 회계, 총무에게 맡겨 세부안을 마련토록 가결하다.

####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 2021. 10. 19(화) 11:00

☞ 장 소 : 동방명주 중식당(잠실)

☞ 결의사항

- ① 104회 총회 시 총무, 사무총장에 건에 대한 영상물과 유인물 등을 확인하여 차기 임원회에 보고하도록 장로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②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부총회장선거무효가처분과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총회를 상대로 제출되었음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대로 총회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 대응해 줄 것으로 요청하니, 총회가 대응하기로 하고 서기, 회록서기, 부회계, 담당직원에게 맡기기로 하고 목사 부총회장은 옵서버로 참여토록 가결하다.
- ③ 서기영 장로가 제기한 장로부총회장 후보등록 가처분 항고(2021라21048) 건과 본안 소송(2021가합2467, 2021가합2344)에 대하여는 총회가 대응하기로 하다.
- ④ 경기수원노회에서 청원한 서기영 장로의 사회법 제소에 대해 총회선거규정 제18조 3항대로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한 건은 당회와 노회에 지시하여 즉시 소송을 취하도록 지도하고 11월 19일 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고, 불이행 시 위 선거규정과 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에 의거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5) 제5차 임원회

☞ 일 시 : 2021. 10. 21(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 행정 전산화 건으로, 총회로 접수되는 문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계획을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시행토록 하고, 총회행정 전반에 걸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서기, 부서기, 회계에게 맡겨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 ② 제106회 총회 임원회 수입사항에 대하여
  - 가. 편목특별교육과정 실시 현의의 건은 지방신학교 활성화 연구위원회 보고대로 시행하기 위하여 총회신학원 설립 준비위원을 선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 나. 납골당 투자 손실 부분을 총회가 보상해 줄 것을 현의한 건은 납골당 관련 인사 처리와 매각까지 납골당 문제가 모두 마무리 되었으므로 연기금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가입자를 확대 되도록 추진하기로 하다.
  - 다. 서수원1노회를 서수원노회 명칭 변경하기로 한 건은 서수원1노회에 총회결의대로 이행하여 보고토록 지시하기로 하다.



- 라. 총회 안에 상담센터를 개설하자는 건은 총회가 직접 운영할 경우 시설비, 운영비 등 비용발생이 클 수 있으므로 교단 내의 관련 인프라를 정리, 공유하여 적극 활용하고, 총신대학교 관련학과와도 협의하여 연구하도록 사회부로 이첩하기로 하다.
  - 마. 총신대학교 장로교육원 수료자에 대하여 장로고시 일부를 면제해 주도록 현의한 건은 총회 신학원 설립준비위원회로 보내 지방신학교 활성화 방안과 함께 처리토록 하다.
  - 바. 총회회관 1층에 있는 역사관을 이전하도록 현의한 건은 이관하기로 하고 목사부총회장, 회록서기, 부회계에게 맡겨 역사위원회와 장소 및 이관방법 등 세부사항을 협의토록 하다.
  - 사. 총회, 노회, 교회에서 제출되는 문서 통일화 되도록 현의한 건은 서기단에 맡겨 2002년에 발행된 표준 목회행정서식편람을 수정보완하기로 하다.
  - 아. 경성노회가 현의한 중부협의회에서 서북협의회로 소속을 변경해달라는 건은 지역협의회는 총회 관할 사항이 아니므로 양 지역협의회에서 확인하여 처리토록 하다.
  - 자. 가칭 전국협의회에 대한 현의의 건은 해체되었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하다.
  - 차. 제106회기에 한하여 세례교인헌금과 총회상회비를 5% 줄여 시행하고, 제106회 총회 예산 집행율 30% 이내로 절감하여 시행하기로 결의한 건과 제106회 총회 결의에 따른 예산 배정의 건은 회계, 부회계에게 맡기기로 하다.
  - 카. 경성남노회 총회 상회비 미납금 전면 재검토 현의의 건은 제104회기, 105회기 총회임원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분납).
  - 타. 분쟁노회로 규정한 충남노회는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여 분쟁노회 수습매뉴얼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 파. 분쟁(사고)노회 수습 매뉴얼 9항 '만2년'을 '만6개월'로 수정하기로 하고 규칙부에 심의를 맡기기로 하다.
  - 하. 2021년 강도사고시 합격자 편목 이 모씨에 대하여 해 노회에 총회결의대로 보고토록 지시하기로 하다.
  - 거. 이슬람대책위원회 위원 증원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 너.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제105회 총회에서 맡긴 사항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보고된 바, 순천선평교회와 범안교회는 해교회에서 공동의회 결의로 노회 소속을 정할 때까지 무소속(행정정지)으로 하고, 장암교회는 사회소송 종결 때까지 모든 행정을 중지하기로 하다.
  - 더.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 건은 총회규칙대로 재판국에 이첩시켜 화해 또는 판결토록 허락한 건은 서기 업무 시 반영하고 현의부에도 통보하기로 하다.
- ③ 제106회기 상설, 특별위원 선정은 총회장과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 ④ 제106회기 총회임원 선거관련 이의서에 대하여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장 김종준 목사가 총회가 파회되어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총회임원회가 판단하도록 반려해 온 바, 사회소송대응 TF팀에서 대응하는 동시에 화해중재를 시도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소강석, 이영신 목사와 서기를 선임하고 전권을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⑤ 사무총장이 직원 인사건으로
    - 가. 경력직원으로 유승왕 씨를 재채용하기로 함을 보고하니 허락하기로 하다.
    - 나. 법인복지국 박상범 국장이 정년이 10월 31일자로 정년퇴임함을 보고하니 전례대로 위로금(3개월 분 급여)을 지급하기로 하고, 1년 계약직으로 재임용하기로 하고(국장대우),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 (6) 제6차 임원회

☞ 일 시 : 2021. 10. 28(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부총회장 선거 소송과 관련하여 직전 선거관리위원장 김종준 목사와 서기 정창수 목사에게 제 106회 총회 선거진행 사항에 대하여 묻고, 소송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다.
- ② 선거관련 소송대응 TFT에서 ㉠총회결의에 순종하도록 서울북노회에 지시하기로 ㉡노회임원들 출석시켜서 전국 총대에게 우편물 보내고 신문에 게재하는 등 총회 법과 규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기로 ㉢총회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총회실행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총회임원회 명의로 총회결의가 존중되도록 기독교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실행위원회 후에 실행위원회 명의로도 성명서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변호사 선임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허락하기로 하고, 총회 실행위원회를 11월 9일 오후 2시, 새에덴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안건은 총회장과 서기에 맡겨 통지하기로 가결하다.
- ③ 제106회 총회회의록을 채택하되, 총회규칙과 선거규정, 자구수정은 서기단에 맡겨 확정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④ 감사부에서 질의한 감사부원과 선관위원을 겸할 수 있는지 질의와 정계규 목사가 제출한 이의서에 대하여는, 총회규칙 제9장 제32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직의 경우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감 대상이 되므로 총회규칙 동조 2항에 의거 감사부원과 선관위원은 겸할 수 없으므로 감사부원을 교체하기로 가결하다.
- ⑤ 규칙부에서 요청한 제106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한 총회선거규정을 규칙부가 먼저 심의하도록 보내달라는 건은 총회에서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 규칙부 심의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 하도록 하였으므로 임원회에서 확정하여 규칙부로 심의를 요청하기로 가결하다.
- ⑥ 규칙부에서 보고한 상비부 실행위원은 상비부 임원 외에 선정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 결의 보고는 전례에 따라 상비부 임원을 포함하여 실행위원을 선정해 왔고 이에 따라 서기가 총회 이후 상비부 실행위원 보고를 조정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⑦ 교육부에서 질의한 타부서 임원 연임에 대한 건은 총회규칙대로 하도록 답변하기로 하다.
- ⑧ 경평노회에서 질의한 노회 재판국원 선정에 대한 건은 투표로 하도록 답변하기로 하다.
- ⑨ 한성노회 장암교회 건으로 부서기 고광석 목사가 양측이 합의하였다 함으로 총회임원회에서 지도위원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니 고광석 목사를 파송기로 하다.
- ⑩ 경상노회 노회장이 직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부노회장과 서기가 제195회 노회에서 노회장을 불신임한 회의록을 보고함으로 서기, 회록서기, 회계에게 맡겨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하다.

## (7) 제7차 임원회

☞ 일 시 : 2021. 11. 9(화) 11:00

☞ 장 소 : 새에덴교회 당회실

## ☞ 결의사항

- ① 은급재단과 유지재단 임원(이사) 결원에 따른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② 유지재단에서 요청한 제주수양관부지를 제105회 총회결의대로 총회는금재단에 매각하는 것은



실정법 상 불가함으로 정상적인 방법(감정평가 등)으로 매각하기로 한 것에 대한 승인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③ 군산동노회 임홍길 목사 외 6명이 부전하여 제출한 군산동노회 소속 5개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 환부 거부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의 건은 제105회기 총회임원회에서 지시한대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2021년 12월 10일까지 보고하도록 군산동노회에 재지시하기로 하다. 만약 노회가 불이행 시 분쟁노회로 규정하기로 하고 한기영 목사에게 맡겨 권고하기로 가결하다.
- ④ 기독교신문사에서 청원한 재정청원의 건은 기독교신문 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⑤ 유안건으로 총회총무 업무추진비 관련 건은 회계가 지난 회기 감사부의 지적이 있어 재정부에서 금번회기에는 총회총무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니, 대안으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을 상향 조정토록 총회장과 회계에게 맡겨 시행하기로(필요시 감사부와 협의) 가결하다.
- ⑥ 민찬기 목사, 노호곤 장로, 서울북노회장이 청원한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실행위원회 처리 청원의 건은 접수하고, 선거관련 소송 TFT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건당 1천만원으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화해 시 계약금으로만 종결하기로 하였음과, 실행위원회 안전인 제106회 총회 선거 소송에 대하여는 선거관련 화해중재위원의 보고만 받도록 하자고 요청하니 받기로 하다.
- ⑦ 서수원1노회에서 노회명칭 변경에 대하여 제106회 총회결의대로 이행하고 정기노회 회의록을 공증하여 제출한 건은 보고대로 받고 노회 명칭을 서수원노회로 변경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⑧ 서울강남노회에서 질의한 후임목사 청빙절차 및 원로목사 추대절차에 대한 건은 현직 부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하는 것은 불가하고, 후임목사를 외부에서 청빙할 때 현직 당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할 시 당회와 공동의회를 주관하는 것은 본인 문제가 아니므로 가능하며,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할 경우 먼저 시무사면을 제출하고 원로목사 공동의회 투표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로 하다.
- ⑨ 제106회기 상설·특별위원 발표와 관련하여 상비부장이 포함되는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서기에게 맡겨 조정토록 하고, 총회임원회 산하 위기대응관리본부에 대하여는 본부장 권순웅 목사가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니 3명 증원하기로 하고 본부장에게 맡겨 선임하기로 하다.

### (8) 제8차 임원회

☞ 일 시 : 2021. 11. 30(화) 14:00

☞ 장 소 : 대암교회당

####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주요 일정을 결정하다.
  - 가. 2022년 신년하례회 : 2022.1.6.(목) ~ 7(금)
  - 나.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 2022.5.9.(월) ~ 11(수)
  - 다. 제107회 총회 : 2022.9.19.(월) ~ 23(금)
- ② 총신대학교이사회의 총회의 학교법인 정관 개정 이행 요청에 대한 회신 건은,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위원회 운영이 안되는 것 등 정관개정 지연 사유를 들고 있으나 총회는 총회결의대로 속히 정관을 개정토록 지시한 것인 바, 기한 내에 정관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결의 위반, 해총회 행위로 해 노회에 권징절차를 거쳐 징계하도록 지시하기로 하고 서기와 회록서기에

- 게 맡겨 재단이사장과 해 노회에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 ③ 대전노회에서 보고한 서기영 장로 지도지시에 대한 답변의 건은 계속 지도 중이라는 보고로 받기로 하다.
  - ④ 서울노회에서 질의한 아현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질의의 건은 목사부총회장과 부서기에게 맡겨 법적 자문을 얻어 차기 임원회에서 답변하기로 하다.
  - ⑤ 부천노회에서 보고한 2021년도 강도사고시 관련 확인 보고의 건은 서기부에 맡겨 제105회기 고시부장과 사무당국과 협의하여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하다.
  - ⑥ 충남노회 고영국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관련 법원 판결 결과 통보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니, 제5차 임원회 시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여 분쟁노회 수습매뉴얼대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회록서기를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에 맡겨 노회를 소집하여 조직토록 가결하다.
  - ⑦ 기독교신문구조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칭 변경 요청한 건은 '기독교신문구조조정처리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 ⑧ CBS에서 요청한 교단 파송(보궐)이사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 ⑨ 전국여교역자회에서 청원한 전국여교역자회관 건립 재정 청원의 건은 회계, 부회계에게 맡겨 검토하여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하다.
  - ⑩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을 유인물대로 심의하니, 제10조, 제15조, 제27조는 현행대로 하고, 제28조 사전 선거운동 금지 1,2,3항의 '총회파회일부터'를 '당해년 1월 1일부터'로 하되 전국장로회연합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는 1회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서기단에게 맡겨 자구정리하여 규칙부로 보내도록 가결하다.
  - ⑪ 부총회장 권순용 목사가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를 제106회 총회결의대로(제104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교육개발원에 맡겨 조직하되 업무는 교육국에서 맡도록 요청하니, 서기, 부서기에게 맡겨 검토 후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⑫ 명예퇴직 시행세칙은 서기, 총무에게 맡겨 검토 후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⑬ 통합측 임원회와 상견례를 2021.12.21.(화)에 하기로 하고, 장소 선정은 서기와 총무에게 맡기로 하다.

## (9) 제9차 임원회

☞ 일 시 : 2021. 12. 9(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2022년 신년기도회(하례회)를 기도원에서 갖기로 하였으나 장소섭외가 불가하여 서울지역 교회 중 교통과 주차가 용이한 교회를 섭외하여 1월 6일(목) 11시부터 오후4시까지로 변경하기로 하고 서기에게 맡겨 준비하도록 하다.
- ② 서울노회 아현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관련 질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의 보고대로 제88회 총회결의 이후 부목사 사임 후 담임 청빙 가능 기간을 정한 총회결의가 없으므로 법적 청빙절차에 따라 해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③ 경상노회 관련 소위원회와 경안노회 영덕교회 관련 소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듣고 행정 처리안을 마련하여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하다.
- ④ 총회신학원복원및편목과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장로교육원 관련 시행 보고의 건은 보고대로



받고 소위원회에 맡겨 시행하도록 하다.

- ⑤ 북평양노회의 백장현 장로 발전기금 반환 요청 건과 북평양노회 이창원 장로의 부회계후보 등 록금 반환 재청원의 건은 총회 선거규정과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대로 반환이 불가함을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 ⑥ 직전 회의 시 서기, 총무에게 맡겨 살피도록 한 명예퇴직 시행세칙을 유인물대로 제정하다.
- ⑦ 인사위원장 이은철 목사가 2022년도 직원승진 대상자와 정건수 국장의 명예퇴직 건을 보고하니 허락하기로 하고, 정건수 국장은 전례에 따라 예우하기로 가결하다.  
가. 과장으로 승진자 : 현은경, 임정은, 현지혜, 김항식  
나. 대리로 승진자 : 임준수, 박경현, 이건영, 한승남, 서우석, 박찬영  
다. 주임으로 승진자 : 정주은, 이정은, 김지연
- ⑧ 부총회장 노병선 장로가 서기영 장로가 제기한 사회소송 건의 진행 여부를 물으니 사회소송대응TF팀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⑨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의 보고로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업무는 직전 임원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⑩ CBS이사는 소강석 목사로 추천하기로 가결하다.

### (10) 제10차 임원회

☞ 일 시 : 2021. 12. 22(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원복원및편목과정소위원회에서 편목특별과정 교육 시행계획(국내 및 미주지역)을 보고하니 유인물대로 시행하되 접수 및 전형료와 수업료를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다.
- ② 경상노회 관련 건으로  
가. 소위원회에서 양측에 강력히 화해를 촉구하였으나 노회장 측에서 사법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2021.12.14.일자로 부노회장 양충만 목사를 노회장직무대리로 하여 조속히 노회를 안정시키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보고하다.  
나. 위 지시에 대하여 김성곤 노회장이 취소를 청원하였고 27명이 연서하여 총회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분쟁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바, 화해중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③ 경안노회 영덕교회 소위원회에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화해를 독려했으나 목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고하니 제105회 총회결의대로 노회가 처리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④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총회공문 효력여부 확인 및 제106회 총회회록 관련자료 송부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⑤ 서기가 총신대학교 총장이 요청한 장로교육원 공동명의 수료증 발급 및 총회장상 수여 요청의 건에 대하여 허락하여 시행하였음을 보고하니 추인하다.
- ⑥ 군산동노회에서 임홍길 목사 외 이명이적 환부처리토록 지시한 것에 대해 결과 보고한 건은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⑦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에서 소강석 목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이므로 타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처리를 청원한 건에 대하여는 소강석 목사는 제105회 총회장으로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를 발의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으므로 자문(전문)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연속성을 위해 목사부총회장까지 자문(전문)위원으로 선임토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⑧ 총회유지재단에서 임원(감사) 결원에 따른 추천을 요청한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 ⑨ 신학부에서 신학정체성선언문준비위원회 사업비를 추경 요청한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 ⑩ 회계가 전국여교역자회관 건립 지원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니 총회 은퇴여교역자기금(생계비지원)으로 9억 7천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중 7억원을 건축비로 요청하는 바, 지원하기로 하되 목적기금 사용 절차를 확인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 ⑪ 신규임원 친목회를 1월 6일(목) 오후 5시에 갖기로 하다.
- ⑫ 1차 임원수련회를 1월 31일부터 2박3일간 제주에서 갖기로 하다.
- ⑬ 박해근 목사의 진정 건은 12월 27일에 있을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고 다음 임원회 때 다루기로 하다.

### (11) 제11차 임원회

☞ 일 시 : 2022. 1. 6(목) 16:10

☞ 장 소 : 충현교회당

☞ 결의사항

- ① 규칙부에 1월 5일까지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1월 18일 규칙부 실행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이후 처리하기로 하다.
- ② 제106회총회 은혜로운동행 전국기도회를 총신신대원 양지캠퍼스(아외)에서 개최하기로 하다.
- ③ 박해근 씨의 손해배상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이종철 목사가 지난 회기 임원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으로 중재 중임으로 보고하니 1월 16일까지 결과가 없으면 1월 17일에 현의 부로 이첩하기로 하다.

### (12) 제12차 임원회

☞ 일 시 : 2022. 1. 20(목) 11:00

☞ 장 소 :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규칙부 1월 18일 실행위원회가 성수 미달되어 선거규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차기총회 선거일정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이 초래되는 바, 2월 8일까지(차기 규칙부 실행위원회 날자) 처리하지 않을 시 총회결의 미이행으로 규칙부 임원들을 천서 제한하기로 가결하다.
- ② 서기가 경상노회에 대하여 화해중재위원회 요청으로 양측에 행정중지를 명령하였음을 보고하니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 ③ 총회신학원복원 및 편목과정시행 소위원 한기영 목사가 총회신학연수원(가칭) 운영방안을 유인 물로 보고하니 위원회에 맡겨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시행토록 하다.
- ④ 재정청원 건으로 안동노회의 안동북문교회 보수비용 지원 청원의 건과 학생지도부의 추경 청원의 건과 이슬람대책위원회의 이슬람전문인 양성교재 발간을 위한 추경 청원의 건과 기독교신문구조조정처리위원회의 추경 청원의 건과 총회교육개발원의 교재개발비 추경 청원의 건과 다음세대운동본부의 사업부 추경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 ⑤ 경기중부노회에서 질의한 인천새소망교회 가입에 관한 건은  
가. 탈퇴 후 3년이 경과되어 원노회인 서인천노회에 복귀를 수차례 청원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가치분 소송을 제기하여 김영남 목사의 담임목사 직무정지와 경기서노회 소속 박성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함으로 교회 가입만 허락하기로 하고



나. 법원에서 박성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배됨으로 경기서노회에 소속회원을 지도하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⑥ 총회임원 제주수련회 시 제주노회 미래자립교회를 방문하여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가결하다.
- ⑦ 부천노회 이덕교 목사(편목)의 2021년도 강도사고시 관련 사실확인이 되었으므로 합격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⑧ 권순용 목사가 충남노회 소위원 사임을 청원하니 지동빈 장로로 교체하기로 하다.
- ⑨ 서기가 대구서현교회와 박혜근 목사의 합의가 불발되었음을 보고하니 지난 임원회 결의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 ⑩ 서기가 순천노회장이 요청한 면직된 회원의 총회전산 정리 건을 처리하였으나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반기로 하다.
- ⑪ 중앙노회에서 청원한 해린교회 이바울 목사 가입(복귀)의 건은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⑫ 기독교신문구조조정처리위원장이 정년이 도래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바, 가급적 1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 함으로 위원 보선은 하지 않고 필요시 자문위원으로 섭기도록하기로 하다.

### (13) 제13차 임원회

☞ 일 시 : 2022. 2. 1(화) 10:00

☞ 장 소 : 제주 신화리조트 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제46회 총회 초청 건을 서기가 보고하니 유인물대로 허락하기로 결의하다.
- ② 제103회기 편목교육수료자 학적이관 건과 총회신학원 운영안과 편목위원회 전체 보고를 받고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의하다.
- ③ 총회신학원복원 및 편목과정소위원장 고흥석 목사가 특별편목과정 재정지출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반기로 하다.  
 가. 제106회 편목과정(A~C반) 총 예산: 45,000,000(1인당 30만원×158명)  
 나. 제103회 편목과정(D반) 지원금 10,000,000(1인당 10만원×100명)  
 다. D반 수업료:1억 예정(등록자 1인당 100만원)/총신대로 송금(최종 등록확인 후)  
 라. 미주지역 편목과정 예산은 국내편목에 준하여 지출하며, 소위원 5인을 파견키로 하고 항공료 및 숙박비를 지원하기로 하다.
- ④ 중앙노회 해린교회(이바울 목사) 복귀 청원의 건은 차기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⑤ 성석교회 서경노회로의 전산처리 문제는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전산처리 이후 사무국에서 임의로 발급한 관련서류는 취소토록 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은철 사무총장에게 엄중 서면경고하기로 하고, 차후에 노회 및 교회와 목사(대표자)의 총회 전산처리(기입 또는 삭제)는 임원회의 결의로하기로 하다.
- ⑥ 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재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4일 목요일 차기 임원회까지 보고토록 하다.(장로 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총무)
- ⑦ 총회에서 맡겨준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실행위원회 소집을 위한 안건을 결정하였으며 일시는 차기 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안건은 ㉠총신조사처리 및 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보고 ㉡기독교신문구조조정처리위원회 보고 ㉢총신재단이사 총회결의 불이행에 대한 처리 건(㉠㉡항은 차기 임원회에 보고 후에 결정하기로 하다) ㉣은퇴여교역자기금 사용의 건 ㉤총회교역자 연금활성화 방안

## (14) 제14차 임원회

☞ 일 시 : 2022. 2. 10(목) 13:00

☞ 장 소 : 대전 판암교회 북카페

## ☞ 결의사항

- ① 규칙부 선거규정 심의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제105회 선거 규정(제17차 개정)대로 시행키로 하고, 총회임원회의 선거개정안 자구수정하여 보고 지시 기한을 어겨 총회회의록 채택을 지연시킴으로 직무를 유기한 규칙부 임원들에 대해서는 천서를 제한키로 하다.
- ② 중앙노회의 헤린교회(이바울 목사) 복귀 청원 건과 김낙주 목사의 헤린교회 행정중지 해제 건은 보류하기로 하다.
- ③ 이능규 목사의 상소장 기각 건에 대한 재심 신청 건은 보류하기로 하다.
- ④ 뉴질랜드노회 로토루아 갈릴리한인교회 박송수 집사 외 10인의 뉴질랜드노회 고발장은 보류하기로 하다.
- ⑤ CTS기독교TV 파송이사 건은 총회장님께 맡기기로 하다.
- ⑥ 성석교회 관련 건은 성석교회 문제와 관련해 시위가 이어지고 총회본부 업무가 방해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 노회에 통보하여 교회교인들의 총회본부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지도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되 불이행시 제98회,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총대권 5년 정지하기로 하고, 사무총장에게 총회본부 안전대책을 맡기기로 하다.
- ⑦ 경기서노회의 박성철 목사에 관한 답변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⑧ 기타 안건으로
  - 가.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협조 요청은 허락하기로 하다.
  - 나.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의 교단명 사용 승인 요청은 보류하기로 하다.
  - 다. 전국은퇴여교역자회 안식관 건립 건 진행상황 보고는 여교역자회 회장 및 임원들의 인사와 안식관 신축공사에 계획을 설명하다.

## (15) 제15차 임원회

☞ 일 시 : 2022. 2. 24(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중앙노회의 헤린교회(이바울 목사) 복귀 청원 건과 김낙주 목사의 헤린교회 행정중지 해제 청원 건은 제105회 총회결의대로 사법소송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되, 김낙주 목사가 이바울 목사측에서 교회대형버스를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정보공개요청)을 위해 필요한 교회 직인증명서 발급 신청한 건은 위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급해 주기로 가결하다.
- ② 이능규 목사의 상소장 기각 건에 대한 재심 신청 건은 제106회 총회에서 헌의부의 기각 보고를 받았고, 이후 재판국 청원에 대하여 “모든 재판 건은 총회규칙대로 재판국에 이첩시켜 화해 또는 판결토록” 결의한 것은 헌의부 보고를 재론한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의의 원칙(동일 회기 내에는 다를 수 없음)에 의거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③ 뉴질랜드노회 로토루아 갈릴리한인교회 박송수 집사 외 10인이 제출한 뉴질랜드노회 고발장은 서기에게 맡겨 노회에 사실을 확인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④ 사단법인 복음의전함의 교단명 사용 승인 요청 건은 허락하지 않기로 하다.
- ⑤ 함경노회의 총회의 성석교회 관련자 치리 지시에 대한 확인 건은 총회사무실 업무방해 행위가



중단되었으므로 징계지시는 보류하기로 하다.

- ⑥ 수경노회의 동사무사 관련 질의 건은 제105회기 총회임원회에서 동일 건으로 답변한 바 있으므로 그대로 답변하기로 하다.
- ⑦ 경중노회의 의성주기철수난관 사업을 위한 재정 청원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⑧ 경안노회의 영덕교회 관련 총회임원회 지시에 대한 회신 건은 소위원회에 맡겨 강력하게 지시하기로 하다.
- ⑨ 총회역사위원회의 사적지 지정 청원 건은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 ⑩ 군목부의 사업비 추경 청원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 ⑪ 기독교신문사 상벌(인사)위원회의 직원 면직 보고 건은 보고로 받기로 하다.
- ⑫ 감사부의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요청 건은 목사부총회장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⑬ 차기 임원회는 3월 17일(목) GMS본부 사무실에서 갖기로 하다.
- ⑭ 총회실행위원회 날짜를 3월 24일(목)로 하기로 하고 장소는 서기에게 맡겨 정하도록 하고 안건으로 역사위원회의 사적지지정 청원 건과 총회신학원 복원 건을 추가하기로 하다.
- ⑮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이 3월 중순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4월 10일에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에서 갖기로 한 은혜로운동행 전국기도회를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기간 중 병행하기로 하고 서기, 장로부총회장, 회록서기에게 맡겨 기도운동본부와 협의토록 하다.
- ⑯ 2021년도 총회장 성탄카드를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대신 부활절 축하카드를 발송토록 총무가 제안하니 시행하기로 하다.
- ⑰ 총신재단이사회에 정관개정을 지난해 12월 29일까지 지시한 바,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8차 임원회 결의대로 3월에 예정된 재단이사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시 징계하도록 해 노회에 지시하고, 목사 부총회장에게 맡겨 재단이사장에게 총회결의이행을 촉구하기로 하다.
- ⑱ 교회 부목사 사택이 세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입법 제안하기로 하고, 전국교회 통계를 조사하여 차기 임원회 시 논의하기로 하다.
- ⑲ 권순웅 목사가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권에 차별금지법 및 사학법 개정 반대 등 교단의 요구사항을 성명서로 발표하자고 제안하니 초안을 작성하여 회람 후 결정하기로 하다.
- ⑳ 이종철 목사가 총남노회 소위원으로 정치부 이상학 목사, 규칙부 이철우 목사를 보강(분쟁노회 수습매뉴얼 6항)해 줄 것을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하다.
- ㉑ 서기영 장로가 장로부총회장 후보등록 가져분을 기각당하고도 본안을 계속 진행 중이므로 사회소송 제기자에 대한 총회결의대로 해 노회에 징계를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16) 제16차 임원회

☞ 일 시 : 2022. 3. 17(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제59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를 2022년 5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홍천 대명비발디리조트에서 갖기로 하고 준비를 정임원과 총무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② 2022년도 총회장상 시상은 생략하기로 하다.
- ③ 경안노회 영덕교회와 관련하여  
가. 총회임원회 지시에 대한 경안노회의 2차 회신을 확인하니 민형사상 소송이 십 수 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전권을 주어 사실을 확인 후 4월 30일까지 종결하도록 하다. 만일 기한 내 종결되지 않을 시 제105회 총회결의대로 노회의 총회총대권을 5

년간 정지하기로 하다.

나. 영덕교회 양측 당사자 및 관련자가 총회나 지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99회, 제104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노회에 지도를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④ 군산동노회의 5개교회 및 7인 목사 명부삭제 및 평북노회 가입동의서에 대하여는 제106회 총회 시 탈퇴자복귀연구위원회의 보고에 “노회와 탈퇴한 교회와 목사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여, 이적과 이명서를 가고자 하는 노회로 보내게 될 때는 양 노회가 합의했기에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해교회와 목사의 평북노회 가입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⑤ 뉴질랜드노회가 보고한 로토루아 갈릴리한인교회 박송수 씨 외 3인이 제출한 고발장 관련 답변서를 확인하니,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고발장을 반려하기로 하다.

가. 노회가 해교회를 잘 지도하였음을 확인하다.

나. 김기오 목사는 수경노회에서 이명한 목사임과, 국내 체류 중인 목사 2명은 현재 건강상 국내 체류 중이라고 한 보고를 받다.

다. 제102회 총회 시 뉴질랜드노회는 해외노회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설립하였다는 점에서(설립 당시 9당회)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노회상황에 맞게 운영토록 하되,

라. 시무목사의 시무연장 처리는 헌법사항인 바, 노회가 인지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고 유예기간을 청원하였으므로 차기 정기노회에서 적법하게 처리토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⑥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서 청원한 이집트복음장로교(나일총회)와의 MOU 체결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⑦ CBS에서 요청한 교단파송이사 추천의 건은 소강석 목사를 재추천하기로 가결하다.

⑧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한 교단분담금 협조 요청의 건은 지급하기로 가결하다.

⑨ 재정청원 건으로 고시부 추경청원의 건과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추경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⑩ 경상노회 이보길 목사 외 5명의 김성곤 목사에 대한 고발장은 화해중재 중이므로 화해중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⑪ 충남노회 고영국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수습위원 제척 청원의 건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해 소위원회에 다음 주 실행위원회 전까지 처리방침을 보고토록 하고, 필요시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⑫ 헤린교회 김낙주 목사가 제출한 총회증명 발급 후 결과보고 및 후속처리 요청의 건은 결과보고는 보고로 받되 후속처리로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법적대응 지원을 요청한 것은 당사자 간 문제이므로 허락하지 않기로 하다.

⑬ 편재영 목사가 요청한 대법원 소송 변호사 추가선임 위임장 발급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⑭ 이능규 목사가 제출한 상소장 반려에 대한 이의 신청의 건을 심의하니, 상소장을 현의부로 보내 심사토록하기로 가결하다.

⑮ 교회 부목사 사택 세제혜택 입법 제안을 부목사 사택 보유현황 조사 내용 사용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⑯ 감사부에서 요청한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요청의 건은 실행위원회 전까지 조정해 보기로 하다.

⑰ 총회장이 은혜로운동행 전국기도회 현금으로 총신대학교, 지방신대원, 지방인준신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총회임원에게 협조를 구하고, 지방신대원 전임교수와 지방인준신학교 학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져 격려기로 하였음을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⑱ 차기 임원회는 3월 24일(목) 오전10시에 갖기로 하다.

(17) 제17차 임원회

☞ 일 시 : 2022. 3. 24(목)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유안건인 감사부의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재)요청 건은,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장(김종준 목사)이 사과할 마음은 있었으나 기회를 놓쳤으므로 현 총회장에게 대신 감사부장(오광춘 장로)에게 사과를 전하였고, 총회장이 이를 감사부와 금일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기로 하다.
- ② 충남노회 건은 4월 16일에 있을 법원 심리 시까지 유예하기로 가결하다.
- ③ 순천노회 건은 소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더 청취 후 해결방안을 정리하여 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양측에서 분립 혹은 설립 청원이 올라오면 처리하고, 없으면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④ 규칙부의 제106회 총회결의 이행 요청과 분쟁노회수습매뉴얼 심의 보고 건은, 규칙부 서기 이양수 목사가 3월 15일부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규칙부장 단독으로 제출한 것은 서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고, 규칙부 실행위원회의 해당 청원(총회선거규정 심의결과를 총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달라는 청원) 역시 참석인원 11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4명이므로 결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⑤ 대구동노회와 관련하여 노회장 이억주 목사가 제출한 노회장 사임서에 대한 질의 및 제71회 정기노회 개최 적법성에 대한 질의와, 부노회장 구희섭 목사가 제출한 노회 대표자 변경 보고 건은 노회장 이억주 목사가 스스로 사임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개인이 올린 질의서에 답변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⑥ 경안노회 영덕교회 건은 제16차 총회임원회 결의대로 경안노회에 허락한 처리 유예기간 이후에 보고받아 처리하기로 하다.
- ⑦ MOU체결을 위해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가 요청한 이집트복음장로교단 방문 건은 총회장과 회록서기가 방문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 ⑧ 총회장이 성석교회와 관련해 분쟁하고 있는 양측 모두 어려움이 있고, 교회의 조속한 회복과 유익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하니,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3인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⑨ 차기 임원회는 4월 7일(목) 오전 11시에 갖기로 하다.

(18) 제18차 임원회

☞ 일 시 : 2022. 4. 7(목) 11:15

☞ 장 소 : GMS선교센터

☞ 결의사항

- ①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시행 관련 건으로
  - 가. 학교규정 개정 및 학내 인사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후속처리 건은 총신대학교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내용을 수정 정리하여 총신재단이사회로 보내기로 하다.
  - 나. 총회연기금 활성화 방안으로,
    - ① 은급기금으로 세례교인헌금의 5%를 지원하기로 한 건은 재정부로 보내 제107회기 예

산안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되, 금번 회기에도 회기 말 결산 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추경하도록 통보하기로 하다.

- ㉠ 총회총대 총회 연기금 의무 가입 건은, 서기가 제107회 총회 입후보자는 전년도에 이미 시행하였던바 전례대로 시행토록 선관위에 통지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고, 제107회 총회총대는 금년 6월까지 목사는 연금과 기금에, 장로는 기금에 가입하도록 전국노회에 통지하기로 하고, 전국교회가 연기금에 가입하도록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하다.

다. 전국여교역자회 안식관 건립 지원금 처리는 회계부에 맡기기로 하다.

라. 총신대학교 지원금을 재단전입금으로 보내기로 한 건은 세례교인헌금 목적대로 총회인재양성을 위한 지원금(군목후보생 장학금 포함)이므로 교비로 사용하도록 통지하기로 가결하다.

- ② 총신재단이사장 및 이사 총회결의 불이행 건은 재단이사장이 총회결의대로 이행할 뜻을 밝힌 바, 차기 회의 전까지 분명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할 시 다루기로 하다.
- ③ 화해중재위원회의 회의비 추경 청원 건과 교정선교위원회의 사업비 및 회의비 추경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④ 순천노회소위원회가 양측을 만나 중재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니 법적인 문제를 살펴 중재토록 하되, 노회장 측의 요청으로 총회전산에서 행정보류 처리한 목사에 대하여는 복원키로 가결하다.

## (19) 제19차 임원회

☞ 일 시 : 2022. 5. 3(화) 13:00

☞ 장 소 : 계룡 나눔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서기영 장로 징계지시 취소 보고 건은 당회장 류명렬 목사가 총회의 징계지시를 취소하면 노회에서 잘 해결하겠다고 하여 시행하였는데 서기영 장로가 다시 총회장을 고소하였음을 서기가 보고하니, 대전노회에 다시 징계를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② 화해중재위원회의 경상노회 화해중재 결과 보고의 건은 보고로만 받고, 양측에 공히 행정중지토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성곤 목사가 총회지시를 무시하고 노회를 소집한 것은 불법이나 사회소송에서 노회장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기에 소위원회에 맡겨 한 번 더 중재토록 하다.
- ③ 고시부장 소천으로 인하여 서기를 부장대행으로 하여 임원을 재조직한 고시부의 조직보고와, 고시부의 대내외 업무를 위해 부장으로서의 직위가 필요하기에 서기를 부장대행이 아니라 고시부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원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④ 전남노회에서 질의한 '본회가 규칙부로 하여금 규칙개정을 하여 다음 회기 규칙부 보고 때 본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을 유안건으로 처리함이 맞는지, 규칙부 보고로 처리함이 맞는지'의 건은 회록서기와 부회록서기에게 맡겨 전남노회 전 회의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다.
- ⑤ 경청노회에서 질의한 장로총대 자격 여부에 관한 건은 총회헌법대로 총대 자격이 있다고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⑥ 경안노회에서 제출한 영덕교회 관련 지시에 대한 건은 보고로 받고, 소위원회에 맡겨 조종배 목사를 만나 최종 확인한 후 행정지시하기로 하다.
- ⑦ 충남노회 고영국 목사 외 1인이 제기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2022카합20654) 건은 당사자인 윤익세, 박노섭 목사에게 위임하여 대응토록 가결하다.
- ⑧ 대구동노회 우종대 목사와 구회섭 목사가 제출한 노회 조직보고의 건은 총회에 등록된 노회



- 직인을 사용한 구회섭 목사의 조직보고를 받고 우종대 목사의 조직보고는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⑨ 사무총장이 사설신문 기자 몇몇이 '총신 총회 출입 기자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전국교회에 찬조를 요청하고 총회에 출입하며 실력행사를 하는 등 무리를 주고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을 보고하니, 사무총장에게 맡겨 총회의 출입을 제재하도록 하고, 해 노회에 지시하여 단체를 해체토록 지도할 것과 소속목사의 기자회견을 허락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⑩ 전남노회의 개척교회 설립 재정청원, 총회연금가입자회의 재정청원, 고시부와 기독교신문구조조정처리위원회의 회의비 추경 청원, 총회역사위원회의 회의비 및 행사비 추경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⑪ 편목과정특별소위원장 고평석 목사가 편목과 미주 강도사고시 비용을 편목교육등록비에서 부담해달라는 고시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하니 허락하되, 회계와 사무총장에게 맡겨 세부 예산을 확인하여 처리토록 하다.
  - ⑫ 대전신학교의 대전신학연수원으로 명칭변경 보고와 소속증명서 발급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⑬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건립사업 후원 요청의 건은 숙고해 보기로 하다.
  - ⑭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제주수양관 부지 매각과 관련해 등기 명의자와 제주노회에 공문발송을 요청한 건은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20) 제20차 임원회

☞ 일 시 : 2022. 5. 17(화) 13:00

☞ 장 소 : 엠버서버 풀만호텔 소회의실, 분당우리교회 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충남노회 수습소위원회 서기 이종철 목사의 소위원회 보고와 수습위원회 위원장 노병선 장로의 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과 입장을 보고 받다.
- ② 충남노회 임원 선출 중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채증된 동영상을 확인하다.
- ③ 서기와 부서기에게 맡겨서 총회임원회 성명서를 교단지에 광고하기로 하다.
- ④ 차기임원회에 충남노회 수습위원회의 폭력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대처하기로 하다.

## (21) 제21차 임원회

☞ 일 시 : 2022. 5. 23(월) 15:40

☞ 장 소 : 주다산교회 새가족실

### ☞ 결의사항

- ① 총신재단이사장 및 이사 총회결의 불이행 건은 총회결의 이행추구와 함께 총신대 정관개정 불이행에 따른 징계 지시하기로 하고 6월 24일까지 보고토록 하다.
- ② 경상노회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양측(김성곤 목사 측, 최호숙 목사 측)에 노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로 하다.
- ③ 충남노회 수습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총회임원 기독교신문에 성명서 발표, 폭력행위 당사자 총대 정지와 충남노회의 폐지 건은 분쟁노회 수습매뉴얼대로 임원회가 제107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동영상은 당사자가 법적으로 사용을 요청할 경우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출을 요구할 시에만 제출하기로 하다.



- ④ 성석교회 소위원회의 보고는 차기회에서 보고받기로 하다.
- ⑤ 수경노회 임시노회 안전 및 시찰회 임원 관련 질의 건은 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로 하다.
- ⑥ 충북노회 부강교회 100주년 역사사적지 지정 요청 건은 총회역사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 ⑦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보선 건은 총회장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⑧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브라질 장로교회 제40회 총회 참석 허락 청원 건은 총회장과 회록서기가 참석하기로 하다.
- ⑨ 헌의부 이능규 씨 상소장 반려 건은 헌의부로 보내기로 하고 만일 반려 의견 시 본인에게 반려토록 하다.
- ⑩ 박해근 씨 진정 청원 건은 헌의부로 보내기로 하다.(본인에게 반려)
- ⑪ 농어촌부 회의비 추경 청원 건과 다음세대운동본부 회의 및 사업비 추경 청원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 ⑫ 인사위원회 보고는 차기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⑬ 언론대응 방안은 제19차 임원회 결의대로 시행하고, 총회 행사나 각 상비부 및 위원회 행사 시 출입 기자들에게 교통비나 경비를 일절 지출하지 않기로 하다.
- ⑭ 영덕교회 건은 경안노회로 하여금 양측을 중재하거나, 중재가 불가할 시 제105회 총회결의대로 처리하고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노회의 총회총대권을 5년간 정지할 것임을 통보하기로 하다.
- ⑮ 제107회 총회준비위원회 조직과 장소 문제는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께 일임하기로 하다.

## (22) 제22차 임원회

☞ 일 시 : 2022. 6. 30(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헌금 1,558만 6,100원은 캄보디아 선교사 위로회에 5백 만 원, 나머지는 뉴질랜드 호주 선교사 위로회에 사용하기로 하다.
- ②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서 청원한 캄보디아장로교회 독노회 방문 및 MOU 체결 허락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 ③ 충남노회 관련 건으로
  - 가. 노병선 장로부총회장의 윤익세 씨 폭행사건 소송계약 대금 청원의 건은 총회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총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으로 지원하되, 변호사 선임비용은 총무, 사무총장, 회계에게 맡겨 전례를 살펴 금액을 결정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 나. 경기수원노회장 박충권 씨 외 43인의 윤익세 씨에 대한 고소의 건은 원고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 ④ 경상노회 건은 차기 회의 시 다루기로 하다.
- ⑤ 전서노회의 총신대 재단이사장 징계지시에 대한 질의 및 지시 철회 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총회결의와 임원회 결의대로 시행하도록 천서검사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 ⑥ 대전노회의 사회법정 소송 제기자 징계 지시에 대한 보고의 건은 임원회 결의대로 이행토록 천서검사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 ⑦ 경안노회에서 영덕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한 건에 대하여는 경안노회 전회원이 영덕교회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영덕교회 문제는 총회결의대로 '노회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상세히 보도하도록 기독교신문에 요청하고, 차기 회의



전까지 결과 보고를 기다려 보기로 하다.

- ⑧ 순천노회(문성식 노회장)의 면직 제명자를 총회 전산에 처리해달라는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고, 순천노회관련소위원회의 처리경과를 차기 회의 시 보고토록 하다.
- ⑨ 서경노회의 성석교회 정보변경 처리 요청의 건은 차기 회의 시 다루기로 하다.
- ⑩ 총회역사관 이관 건에 대하여 총회역사위원장 함성의 목사가 1층에 역사관을 마련한 배경, 경과, 의미를 설명하며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피력하니, 차기 회의 전까지 위원회에는 역사관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역사관 이전의 당위성, 총신대학교 이관 시 운영 계획, 전망과 비전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다.
- ⑪ 지역경내 타노회 소속교회 관련 건으로 서대구노회의 대구노회 소속교회 및 목사이명에 관한 협조 청원과 대구노회의 총회결의 시행 지시 청원의 건은 천서검사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 ⑫ 인천세소망교회와 관련하여 경기중부노회에서 제출한 총회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경기서노회 행정조치 및 천서제한 조치 요청의 건은 노회 간 문제이므로 임원회가 관여하지 않기로 하다.
- ⑬ 현의부의 회의비 추경 청원과 사회부의 다문화가정 선교비 지원금 추경 청원과 면려부의 회의비 및 워크숍 비용 추경 청원과 교육개발원의 교재개발비 추경 청원과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의 추경 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 ⑭ 전국남전도회연합회의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을 위한 재정청원과 기독교장년면려연합회의 면려대학 설립관련 재정청원과 안동노회의 세움교회 누수로 인한 재정보조 청원과 북전주노회의 학동교회 수만교회 신월교회 순교사적지 리모델링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 ⑮ 한국교회총연합 회비 납입 요청의 건과 한국장로교총회설립110주년 기념대회 재정협조 요청의 건은 요청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 (23) 제23차 임원회

☞ 일 시 : 2022. 7. 12(화) 20:00

☞ 장 소 : 호주 풀만호텔 커피숍

#### ☞ 결의사항

- ① 경상노회 소위원회에서 이원평 목사측이 노회를 개최하고 제출한 노회상황보고서 실사를 위하여 이이원평 목사(노회장), 조성래 목사(서기), 김진곤 장로(부노회장)를 불러서(2022.7.5., 대구 인터볼고호텔) 조직당회 시무장로가 확실한지 확인하였음을 보고하니 보고대로 받고, 이원평 목사 측을 경상노회로 인정하기로 하다. 그리고 반대 측은 보고가 없었으므로 보고가 올라올 시 논의하기로 하다.
- ② 경안노회는 영덕교회 관련 총회결의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총회결의대로 경안노회의 총회총대권 5년 정지와 총회전산망에서 영덕교회 대표자를 삭제하기로 하고, 천서검사위원회에 보내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 ③ 순천노회수습소위원회에서 순천노회는 화해를 이루지 못하였음을 보고하니 천서검사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④ 천서검사위원회에서 총회총대 연기금 시행에 대하여 목사총대는 연금과 기금을 8월 5일까지 가입토록 하고, 장로총대의 기금가입은 1년 유예하기로 하였으므로 보고하니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 (24) 제24차 임원회

☞ 일 시 : 2022. 8. 4(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직원인사 건으로 사무총장이 21차 임원회에서 보고하였던 직원 승진 건은 보고대로 허락하기로 하고, 직원재배치를 위한 소위원회의 인사이동 보고는 107회기 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승진자 : 김귀분 부장을 출판국장대우로, 박정섭 차장을 부장대우로, 전성민 과장을 차장으로, 남장근, 윤석훈 대리를 과장으로
- ② 총회역사관 이전에 대하여 총회역사위원회와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제출한 바, 107회기 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 ③ 성석교회 관련 건으로, 서기가 편재영 목사의 재심청구를 절차미비(서경노회 경유미비)로 반려하였고, 어제 함경노회에서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에 하자가 있으므로(문서번호 및 노회장 오기) 다룰 수 없음과 유안건인 서경노회의 성석교회 정보변경 요청 건을 보고하니 편재영 목사의 재심청구는 현의부로 보내고 성석교회의 소속처리는 107회기 임원회로 이첩하기로 하다.
- ④ 제107회 총회 일정을 2022년 9월 19일(월) 오후2시부터 9월 22일(목) 낮12시, 장소는 주다산교회로 공고하기로 하고, 공천위원회를 9월 6일(화) 오전11시, 대전중앙교회에서 갖기로 하다.
- ⑤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의 제107회 총회 해외교단 초청 및 재정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 ⑥ 미주 특별편목교육 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류응렬 목사와 박헌성 목사에게 총회석상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하다.
- ⑦ 서기가 경상노회 관련 이원평 목사 측과 방동희 목사 측이 제출한 각 서류 건에 대하여 양측이 합의중에 있음을 보고하다.
- ⑧ 서기가 장로부총회장 당선무효확인(2021가합2467) 건이 각하되었음과, 대전중앙교회 당회에서 서기영 장로를 2년간 시무정지하였다는 대전노회의 보고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노병선 장로에게 소송 상황을 물으니, 서기영 장로가 7월 18일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하므로, 이 건을 천서검사위원회에서 계속 처리토록 하다.
- ⑨ 총회역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충북노회 부강장로교회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지정 청원의 건은 총회로 청원토록 하다.
- ⑩ 서만중 목사가 제출한 총회임원회를 기망한 조사처리 청원 건에 대하여, 서기가 노회서기에게 확인한 바, 서만중 목사가 노회로 제출하지 않고 총회로 보낸 것이라고 함으로 노회로 먼저 제출토록 반려하기로 하다.
- ⑪ 총회신학원복원및편목교육시행위원회에서 편목교육 등록금 중에서 1,000만원을 총회신학원에 지원해 주기로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하다.

## 2) 경상노회 관련 소위원회

###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1. 11. 26(금) 10:00

☞ 장 소 : 대전판암교회당

### ☞ 결의사항

- ① 노회장 측에게 사과를 받고 화해를 하도록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1. 12. 15(수) 13:00

☞ 장 소 : 대전역

☞ 결의사항

- ① 총회 지시공문 내용을 설명하다.
- ② 최선을 다하여 화합하기로 하다.
- ③ 신상에 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다.
- ④ 목사가 원할 시 지역 안에 있는 노회로 조건 없이 보내주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2. 7. 5(수) 11:00

☞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커피숍

☞ 결의사항

- ① 경상노회 이원평 목사 측에서 회의를 참석하다(노회장 이원평 목사, 부노회장 김진곤 장로, 서기 조성래 목사).
- ② 조직교회 시무장로 수를 확인하여 21당회 이상 됨을 확인하다.

3) 대구서현교회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2. 1. 10(월) 10:00

☞ 장 소 : 동대구역

☞ 결의사항

- ① 서현교회 장로 3인과 만나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점을 찾아 합의하기로 하다.

4) 순천노회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1. 12. 3(금)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다.  
10시 김택근 목사 측(김택근 목사, 박선희 목사, 류종성 목사)  
11시 노회장 측(이승수 목사, 문성식 목사, 김영현 목사)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2. 1. 27(목)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양측의 상황을 청취하다.  
10시 노회장 측 / 11시 김택근 목사 측

**(3) 제3차 회의**

- ☞ 일 시 : 2022. 3. 29(화) 16:00
- ☞ 장 소 : 대전판암교회당
- ☞ 결의사항
  - ① 노회장 측 3인을 만나 상황을 청취하다.
  - ② 김택근 목사 측 3인을 만나 상황을 청취하다.

**5) 영덕교회 관련 소위원회****(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21. 10. 13(수) 10:00
- ☞ 장 소 : 동탄 스타벅스
- ☞ 결의사항
  - ① 영덕교회 당회원을 만나 내용을 청취하다.

**(2) 제2차 회의**

- ☞ 일 시 : 2021. 10. 28(목) 10:00
- ☞ 장 소 : 수서 스타벅스
- ☞ 결의사항
  - ① 영덕교회 조종배 담임목사의 의견을 청취하다.

**(3) 제3차 회의**

- ☞ 일 시 : 2021. 11. 26(금) 9:00
- ☞ 장 소 : 대전판암교회당
- ☞ 결의사항
  - ① 영덕교회 조종배 목사를 만나 쌍방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논하다.
  - ② 영덕교회 장로 측을 만나 조종배 목사와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하다.

**(4) 제4차 회의**

- ☞ 일 시 : 2022. 3. 22(화) 10:00
- ☞ 장 소 : 대구인터불고호텔 커피숍
- ☞ 결의사항
  - ① 경안노회 4인(현노회장, 현서기, 직전노회장, 직전서기)을 만나 영덕교회 문제를 논의하다.

**6) 총무, 사무총장 업무관련 사실확인 소위원회****(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21. 11. 24(수) 10: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제104회 총회 시 11개 노회가 제출한 총무, 사무총장제도 현의안의 취지를 확인하다.
  - ② 위 현의안에 대하여 정치부 보고에 의한 결의사항과 규칙부에서 상정한 규칙개정 원안 및 결의사항과 해당 회의부분 영상을 확인하다.



- ③ 제104회기 총회임원회에서 총회회의록을 채택한 과정과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개정한 경과(회의록)를 확인하다.
- ④ 고광석 목사에게 맡겨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확정 후 차기임원회 시 보고하기로 하다.

## 7) 제106회총회 선거소송대응관련 소위원회

###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21. 10. 21(목) 12: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울북노회에 공문보내기로 하다.
  - ② 서울북노회 임원회 출석시킴하기로 하다.
  - ③ 변호사 선임은 법무법인 이경으로 선임하기로 하다.
  - ④ 실행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 (2) 제2차 회의

- ☞ 일 시 : 2021. 10. 21(목) 12: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변호사와 미팅하여 소송 제반사항을 의논하다.
  - ② 소송 3건을 확인하다.
  - ③ 1건당 변호사 수임료 천만원씩 하기로하여, 총 3건을 3천만원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 ④ 계약금은 3백만원으로 하고, 심문 기일 전 합의가 성사되면 계약금만 지급하기로 하다.

### (3) 제3차 회의

- ☞ 일 시 : 2021. 11. 1(월)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변호사와 미팅하여 소송 제반 사항을 점검하다.
  - ② 계약금 3백만원은 총회가 지급하기로 하다.

### (4) 제4차 회의

- ☞ 일 시 : 2021. 11. 4(월)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소송 진행사항 점검하다.
  - ② 제106회 총회 선거 소송에 대한 실행위원회 준비 및 점검하다.

### (5) 제5차 회의

- ☞ 일 시 : 2021. 12. 9(목)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대전노회 대전남부교회 서기영 장로가 총회를 상대로 항고한 2021라21048 장로부총회장후보 등록 효력정지가처분 건은 본안 사건(2021가합2467, 2021가합2344)과 함께 범무법인 평강에 위임하여 총회가 대응하기로 하다.

####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21. 12. 30(목)

☞ 장 소 : 마포가든호텔

☞ 결의사항

- ① 서기영 장로를 만나 법적취하 건을 논의하기로 하다.

### 3. 주요사업 및 총회수임사항 처리 보고

#### 1) 은혜로운 동행 농어촌교회 방문

- (1) 2021. 9. 27(월), 전남완도 금당중앙교회(박일중 목사)  
 (2) 2021. 9. 28(화), 경남진해 우도교회(송봉호 목사)  
 (3) 2022. 1. 31(월), 서귀포신일교회(김원득 목사), 제주 사랑샘교회(김태수 목사)  
 (4) 방문내용 : 목회격려, 기도제목 나눔. 위로금 전달

#### 2) 전국목사장로기도회를 위한 준비기도회 / 2022년 전국 노회장서기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 (1) 일시 : 2022. 5. 3(화) 오전11시  
 (2) 장소 : 나눔의교회당(김상운 목사 시무)  
 (3) 기도제목 : ① 전국 목사장로기도회를 위해 ② 총회·노회·교단산하 교회를 위해  
 ③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 3)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 (1) 기간 : 2022. 5. 9(월) ~ 11(수)  
 (2) 장소 : 흥천 소노캄 비발디파크  
 (3) 주제 : 은혜로운 동행(시133:1)  
 (4) 설교 및 강의
- |       |   |
|-------|---|
| 개회예배  | 정성구 목사(전 총신대,대신대 총장)_ 개혁교회의 꿈(히 11:24~26)   |
| 저녁집회  |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_ 마음을 찢어야 산다(욘 2:11~14)<br>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_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삼상 7:3~10)   |
| 새벽기도회 | 김상기 목사(이천은광교회)_ 손바닥만 한 구름에서 부흥을 보다(왕상 18:40~46)   |
| 전체강의  | 이재훈 강도사(새에덴교회)_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목회 전략 및 방향<br>안인섭 교수(총신신대원)코로나 이후 시대 목회를 위한 개혁주의 하나님나라 신학<br>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_ 칼빈에게 설교를 배운다 |
| 트랙강의  | 김기현 장로(대암교회,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_ 정치와 신앙<br>이돈주 장로(사랑의교회, 전 삼성전자 사장)_ 기술과 경영에서의 영성   |
| 결단의시간 | 김남준 목사(열린교회)_ 예배의 본질적 요소의 회복에 관한 연구(요 4:23~24)  |
| 결단의기도 | 최남수 목사(광명교회) 인도   |
| 뮤지컬   | 문화행동 아트트리_ 더 북(The Book) : 성경이 된 사람들  |



#### 4) 총회 선거규정 개정

(1) 시행근거 :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정창수 목사가 보고한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의장이 전년도와 같이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 규칙부 심의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면 총회임원회에서 총회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공포하기로 한 제106회 총회결의

#### (2) 시행내역

- ① 개정안을 처리하여 규칙부에 심의 맡김
- ② 규칙부에서는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을 심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총회가 총회임원회에 맡긴 사항이므로 임원회에서 맡긴 개정안으로 심의하도록 함
-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부에서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을 심의하여 보고함으로 총회결의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제105회 선거규정(제17차 개정안)대로 시행하기로 함

#### 5) 분쟁노회 매뉴얼 개정

(1) 시행근거 :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9항의 분쟁(사고)노회 지정 후 수습처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노회의 폐지 청원 기한을 ‘만 2년’에서 ‘만 6개월’로 수정 청원 건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한 제106회 총회결의

#### (2) 시행내역

- ① 개정안대로 하기로 하고 규칙부에 심의 맡김
- ② 규칙부 실행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총회회기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만 6개월’을 ‘만 1년’으로 수정토록 결의하여 보고함
- ③ 서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규칙부장 단독으로 제출) 규칙부 보고를 기각(임원회 결의대로 확정)

#### 6) 서수원1노회를 서수원노회로 명칭변경

(1) 시행근거 : 명칭 변경 후 수원신학교 소유권과 수원신학교회 재산권 및 수원신학교회 복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후 공증하여 총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명칭 변경을 허락하기로 한 제106회 총회결의

(2) 시행내역 : 총회결의대로 결의하고 정기노회 회의록을 공증하여 제출함으로 서수원노회로 명칭 변경함

#### 7) 전국여교역자회 안식관 건립 지원

(1) 시행근거 : 전국여교역자회(회장 김남순 전도사)에서 제90회 총회(황승기 총회장)에서 ‘은퇴여교역자와 홀사모 쉼터 및 안식관 건립’을 결의하여 충북 충주시에 부지를 매입한 후 중단되었던 바, 자체적으로 충남 아산에 378평 부지를 매입하여 유지재단으로 등기하였으므로 회관 건립비를 총회가 지원해 줄 것을 청원함

#### (2) 시행내역

- ① 총회 은퇴여교역자 생계지원기금 현황 : 971,975,634원(제106회 총회 보고, 매년 일정액 적립)
- ②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2022.3.24.) : 총회 은퇴여교역자 생계지원 목적기금을 총회 은퇴여교역자 안식관 건립을 위해 전국여교역자회(회장 김남순 전도사)에 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함
- ③ 지원금 처리는 회계부에 맡기기로 함



8) 부목사 사택 세제 혜택 입법 제안을 위한 현황조사

- (1) 개요 : 상당수의 교회들이 담임목사 사택 외에도 부교역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의 경우 종교활동과의 직접 관련 여부를 매우 좁게 해석하여 부목사 사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입법 제안을 위해 부교역자 사택 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에게 전달함
- (2) 조사내용 : 부교역자 사택 보유 현황
- (3) 조사방법 : LMS(장문문자)를 통한 설문조사
- (4) 응답현황 : 총 9,840교회 중 1,095교회(11%)
- (5) 조사결과 보고

① 부교역자 사택 보유현황

항목	응답 건수	조직여부	확인 건수
사택보유 없음	261	미조직	311
사택보유 있음	368	조직	750
부교역자 시무없음	466	미확인(확인불가)	34
<b>총합계</b>	<b>1,095</b>	<b>총합계</b>	<b>1,095</b>

② 명이에 따른 사택 현황(중복 답변 가능)

항목	응답 건수
교회대표자	359
담임목사	82
그 외(예)시무장로, 선교단체 등)	30
<b>총합계</b>	<b>471</b>

9) 총회본부 직원 명예퇴직 시행세칙 제정

**명예퇴직 시행세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본부 업무규정 제3장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본부 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총회본부의 정규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청자격) 총회본부의 정규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정년퇴직까지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되고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시행 및 신청 절차) 1. 인사위원장은 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을 고려하여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무에게 보고 후 총회장의 허락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2. 인사 담당부서는 당해 7월초에 명예퇴직 허가 인원, 신청기간,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전 직원에게 공지 한다.
3.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신청서(별지 1호)를 자필로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을 경유,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질병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본인 육성녹음 등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4. 명예퇴직자를 선정할 때 인사위원장은 재정부와 예산 관련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5. 명예퇴직예정일은 당해 9월 30일로 한다.

제5조 (심사결정 및 통지) 1.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무에게 보고 후 총회장 승인으로 결정한다.

- 2. 명예퇴직 여부가 결정되면 인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부서장을 경유, 본인에게 통지한다.
- 3. 명예퇴직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명예퇴직 수당 지급은 예산금액 내에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 ① 상위직급자 및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② 공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자
  - ③ 장기근속자

제6조(신청의 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① 징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징계중인 자
-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 ③ 명예퇴직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2. 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급) 1. 퇴직당시 월봉급액(기본급+업무수당)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 2. 5년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 3. 명예퇴직수당은 일반퇴직금과 동시에 본인에게 지급(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정년 잔여월수 산정에 있어서 해당 월은 1개월로 한다.

제8조(환수대상) 1. 명예퇴직이후 재입사할 수 없으나 재입사하는 경우 전액 환수

- 2.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총회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한다.

2021년 12월 09일 제정